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2.03.01.
개정 2014.11.03.
개정 2017.06.01.
개정 2017.09.01.
개정 2019.07.1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취업, 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
2. 취업, 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취업, 창업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지원
4. 취업, 창업 등 상담 지원
5. 그 밖의 취업, 창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①센터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을 두며, 임기는 1년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,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4조(취업창업지도위원회) 취업창업지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장 평가

제5조(관계부서의 협조) 삭제

제6조(평가) ①센터는 매년 1회(동계방학 중)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에게 공지한다.

②센터는 자체평가 회의를 실시하기 위해 취업, 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문서를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
③해당부서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PDCA구조에 맞춰 자체평가서를 만들어 위원회 회의를 실시한다.
④자체평가서에는 비교과 프로그램별 정성의견과 정량점수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.
⑤위원별 평가결과를 수합하여 정량점수 하위 10% 에 해당한 프로그램 운영부서에 공지하여 개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며, 개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차년도 운영 프로그램에 배제한다.
⑥개선의견서 제출 후 차년도 평가에서도 하위 10%가 된다면 차차년도 운영 프로그램에 배제한다.
⑦센터는 최종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, 보고완료 이후 프로그램별 개선의견을 위원회와 관련 부서에 공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4장 재정

제7조(기타) ①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대학 자체 예산
2. 정부지원 사업 예산
3. 기타 찬조금

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제8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③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④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⑤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